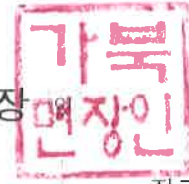
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7월 17일

가북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72-03-01	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7-12

* 직권조치 당시

세대주 : 마 **